

# 제434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6일(월)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가. 재정경제부 소관
  - 나. 기획예산처 소관
  - 다. 국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1
  - 가. 재정경제부 소관
  - 나. 기획예산처 소관
  - 다. 국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 2

(17시21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및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은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가. 재정경제부 소관
  - 나. 기획예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위원회가 2026년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정부는 향후 광주·전남 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통합 수요 발생 시 지방채 인수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달특별회계 세출 중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위한 자본계정 기본경비, 전산운영경비 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향후 추경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한다’를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국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위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까지 포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소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국세청이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추경의 엄격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의 요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핑계로 기존에 국세청이 하고자 했던 사업을 끼워 넣은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규모의 과다입니다. 2133억이라는 이 금액은 공정위, 감사원, 새만금청, 동포청, 권익위의 총지출 예산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개 부처가 1년 동안 집행해야 될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경 사업으로서 슬쩍 끼워 넣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연말 국세청이 동 사업을 예산 신청할 때 국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도 보완 및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후에 추가적인 예산배정 또는 예산편성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약 한 달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추경에 담아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체납관리단 운영에 불필요한 홍보 비용, 채용위탁 용역비, 업추비에 해당하는 사업추진비까지 무분별하게 담겼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의 논리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세청의 추경 필요성을 읽어 보면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을 신속히 소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내용은 반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성실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효과 검증과 함께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채권 관리법을 현재 상임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체납자의 실태 확인 안에, 국세청이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빠진 상태로 국회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채용하고 그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 예산을 추경안이든 본예산에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박성훈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으셨고요. 이번에는 조인철 위원님 찬성 토론이시지요?

**○조인철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찬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 아까 2시부터 소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야당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게 전쟁 추경이 맞느냐,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 시급성이 매우 급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전쟁 추경이라고 말이 됐습니다마는 전쟁 추경이 전쟁에 대비하자는 건 아닙니다. 무기를 사자든지 아니면 어디에 파견하자든지 이런 대응 예산이 아니고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는 예산 측면에서 봐야지 전쟁 자체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체납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국세만 해도 133만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

납자만 3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만 명 정도를 지금 시범사업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800명 정도만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낼 수 없는, 경제적 상황으로 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조사를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4인 가족이면 거의 1000만이 넘어가는 숫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경제적 상황으로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면제를 해 주거나 담감 처리하거나 하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급하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효과나 결과들은 이미 1만 개의 샘플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부수적으로 9500명에 대한 일자리 가치 창출이 됩니다. 원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공일자리카지 창출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감안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박성훈 위원님 1분 하십시오.

○박성훈 위원 이게 국세청이 전쟁과 상관없이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3년 한시사업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연도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으로 물뺄하고 인원도 500%나 추가 증원하는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행안부 직제가 아직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시다만 직제 내용을 들어 보면 공무원 750명을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500억입니다.

결국 총합해 보면 기존 올해 예산 100억, 신규로 이번에 편성되는 2133억에다가 공무원 증원 500억까지 더해서 인건비만 총 273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전쟁 핑계로 끼워 넣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강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조인철 위원님 1분 쓰십시오.

○조인철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 1년 전에 본예산을 편성한 예산들입니다. 그게 지금 전쟁 일어나면서 상황에 맞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만 명을 샘플 조사한 결과 그 효과는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시급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경제활동으로 복귀시켜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양당 찬반토론 잘 들었고요.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과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

면 하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천하람 위원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급성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내신 시급성인 것 같습니다. 채납관리단 규모 히스토리를 보면 원래 임광현 국세청장께서 3년 동안 2000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시면서 2025년 12월 11일에 업무보고하면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6년 1월 20일 국무회의를 하면서 4000명까지, 대통령께서 조금 더 늘리라고 하시니까 4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소심하다. 일거리는 넘치는데 왜 안 하느냐? 사람을 뽑아서 세금 걷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국세청도 처음에 2000명, 4000명 하던 게 갑자기 1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기반한 행정, 데이터 기반한 정책을 하자라고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심지어는 국세청이 원래 검토했던 것은 2000명, 많아도 4000명 규모였는데 대통령님 말 한마디에 1만 명이 된다 이것은 정말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반하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1만 명을 뽑으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채용이 됩니까? 이번에 500명 뽑는데도 3000명 지원했다고 그러지요. 1만 명을 뽑는다고 그랬을 때 이게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그런 일인데 퀄리티 컨트롤이 최소한이라도 될 수 있을 것 인가.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기존 국세청에 있는 공직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일을 할 만한, 정규직 공직자들은 과연 제대로 팀을 짤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한 번에 1만 명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순리대로 한다면, 500명 뽑은 것도 최근이에요. 한 달 전이잖아요. 그러면 500명 뽑은 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정말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 넣어서 늘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늘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차근차근 늘려야지 500명 성과평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소심하다라고 말 한마디하니까 이게 1만 명으로 뺄튀기 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세금, 대한민국의 이런 정말 중요한 인력 채용의 문제가 소심하다라고 하신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됐습니까?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1분 하십시오.

○박성훈 위원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데이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체납관리단을 국세청이 지난해 9월에 10일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68명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는데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당시 9월의 현금정리액이 1년 중 가장 적고요 징수율도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2019년에서 2021년 3년간 약 5500명을 고용하고 83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징수액과 징수율이 그 전후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징수율은 2020년이 최저치에 가까운 37.1%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데이터상으로도 효과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최근 한 달간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있었으면 분명히 저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도 없었고 아직까지 성과도 나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예산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끝으로 임광현 국세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하십시오.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국세 그리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원이 대규모로 들어가게 된 것은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들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주기 위한 목적이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그 효과를 딱 떨어지게 계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투입된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국세청 소관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 이견이 있지요.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 위원(22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민규 박성훈 박수영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이인선 임이자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 ○청가 위원(3인)

안규백 정성호 최은석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허장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문지성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세제실장 조만희

국고실장 황순관

기획예산처

차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직무대리 박창환

국세청

청장 임광현

차장 이성진

기획조정관 김지훈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김휘영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시설사업국장 임병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9)

이상 2건 4월 1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35)

이상 2건 4월 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1)

4월 3일 회부됨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요청안**

(2026. 4. 3. 대통령 제출)

4월 6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 구분   | 행정입법명                                     | 공포번호    | 개정형태 | 소관부처  |
|------|-------------------------------------------|---------|------|-------|
| 대통령령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br>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제36220호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